

구비서류 상세 일람표

구 분	부 수	발급기관	비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부	농협양식	홈페이지 등재
2.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1 부	해당기관	해당자에 한함
3.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 부	최종학교	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해당기관	
5.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 부	전국경찰서	본인만 발급
6. 출자금원장 사본	1 부	농협양식	
7.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 부		
8.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 부		
9.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 부		
10. 비경업관계사실 각서	1 부		
1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 부		
12.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 부		
13. 기타 증명서	1 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서식은 화성농협 홈페이지(<https://cgs.nonghyup.com>)를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서

1. 성 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직 업 :
 5. 학 력 :
 6. 경 력 :

2026년 01월30일 실시하는 조합원인 이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01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농협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출자금원장 사본 1부
2.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6. 비영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9.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10.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 :1. 경력증명서는 기타증명서에 포함되고, 학력 및 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시에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본인이 선거일공고일인 2026년 1월 18일 현재 화성농협 정관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을 충족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2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성농업협동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6년 01월 일

화성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인)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본인이 선거일공고일인 2026년 1월 18일 현재 우리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 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성농업협동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6년 01월 일

화성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인)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본인이 후보자등록일전일(추천일전일)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4항(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서 정한 이 조합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성농업협동조합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26년 01월 일

화성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인)

비경업관계사실확인 각서

본인은 농협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별표2]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동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확인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면서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1월 일

후보자 : _____ (자필서명)

화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화성농업협동조합 귀중

귀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농협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농협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본농협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과 본 농협 조합원인 이사선거의 피선거권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하며, 본 농협 00이사 (00감사) 선거에서의 피선거권 확인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귀 농협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농협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단 정책자금대출업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본농협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기 제공·조회대상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본농협이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意的 효력 기간

본농협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意的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본농협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농협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농협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1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 XXXXXX)

본 농협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본인은 2026년 01월 30일 실시하는 화성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이사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함과 동시에 본 서약서에 명기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조치사항에 성실히 따르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전화(문자포함) · 컴퓨터통신(전자우편포함) · 선거공보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선거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거나 화성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화성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화합과 민주적 인분위기 조성에 적극 헌신한다.
7. 이상과 같이 각 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자격심사 결과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01월 일

후보자 : _____ (자필서명)

화성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중

후보(예정)자의 경업관계 확인 관련 법령

농협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협법 시행령[별표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5조의4 제1항 관련)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8.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업
9.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판매업
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1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13.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14.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
15.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16.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8.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화성농협 정관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